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가정어린이집 연장 특례》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583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제2215583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가정어린이집 연장 특례 (안 제49조의9제2항)	3

I. 박상혁의원 대표발의(제2215583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상혁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5. 12. 24.

다. 회 부 일 : 2025. 12. 2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음.

그런데 6년 경과 후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모집되지 않으면 임대주택 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어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보육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 세대에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공백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3. 검토의견

가.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가정어린이집 연장 특례(안 제49조의9 제2항)

현행	개정안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생략) <u><신설></u> ② ~ ④ (생략)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공공임대주택 내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	

현행법 제49조의9¹⁾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과 임대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²⁾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임대기간인 6년이 경과한 이후 새로운 운영 주체가 없는 경우 학부모가 영유아를 위탁할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워 영유아의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보육공백을 방지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나, 새로운 가정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³⁾를 받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는 과정에서 보육 수요 등을 고려⁴⁾하여 인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임대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므로,

새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모집하였음에도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기간 연장을 허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74

4) 「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9(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육수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